

忠州市議會 第146回 臨時會  
2010.05.06 (목) 11:00

# 條例案審查報告書

- ①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②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 條例案審查報告書

## 1. 심사경과

조 례 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①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10. 4.27	2010. 4.27	2010. 5. 4	2010. 5. 4	사회복지과장
② 충주시 아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자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환경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1)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각종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내지 제10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 관련정보제공, 비밀준수의무, 위원실비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내지 제15조)

## (2)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규모 피해농가를 위한 보상기준 완화 및 피해보상 한도액 상향조정으로 농가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명 및 용어변경

-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 “지원”을 “보상”으로 용어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8조, 9조, 10조)
- 충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심의위원회  
  ↳ 충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안 제10조)

#### 나. 피해보상 제외대상 기준 완화(안 제5조)

- 피해지원 산정액 **20만원 미만** ⇒ **10만원 미만**
- 해당 경작지의 피해율 **20퍼센트 미만**  
  ⇒ 해당 경작지의 피해면적 **100㎡ 미만**

#### 다. 피해보상금 한도액 상향 조정(안 제8조)

- 당해연도 지급금액 최대 **200만원** ⇒ **500만원**

#### 라. 농작물피해 보험가입 신설(안 제14조의 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본 조례안은 최근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의 시장의 책무와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안 제5조(지역연대 설치)부터 안 제10조(간사)까지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충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2010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것을 이행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 내지 제14조는 관련정보제공과 비밀준수의무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됨

본 조례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제명은 함축하면서도 전체적 의미를 가늠할 수 있을 수록 좋으므로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수정하고

제명에는 “방지”로 조례안의 내용 중에는 “예방”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동일 법령상의 용어 사용을 보는 사람의 혼란을 막기 위해 큰 의미의 차이가 없다면 가급적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2)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본 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적극적 보상을 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 중  
“지원”을 “보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소규모 피해 농가를  
위해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 한도액을 상향조정  
하여 피해 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2009년도 농작물 피해지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45건이 접수되어 37건에 33,527천원이 지급됐으며  
피해지원금 산출액 20만원 미만 3건,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초과 4건,  
지급대상자 결격 사유 1건 등  
총 8건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농작물 피해보상 하한을 20만원 미만에서 10만원으로 완화하고  
농가당 연간 지원액을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규모의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와  
상한을 초과하여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에게  
적정 보상이 가능하여 피해 농가의 불만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율이 해당 경작지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피해면적 10제곱미터 미만으로 보상기준을  
피해지율에서 피해면적으로 변경하여 경작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던 것을 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와 약정 체결하여 피해 보상 제반업무를 보험회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함

보험가입의 경우 피해 현장실사 및 전문 손해사정사의 평가를 통한 피해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원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 답변 요지

##### (1) 충주시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질의 : 없음

##### (2)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작년에 지급 한도액인 200만원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었나?

○답변 : 한 두어 가구 있었음

▶질의 : 지급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든지 폐지하는 건 어떤지 ?

○답변 : 환경부 지침이어서 지침이 개정되도록 한 다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질의 : 2009년도 지원금 예산은 얼마 이었나 ?

○답변 : 4,000만원 있었음

▶질의 : 심위위원회는 작년과 같이 연말에 한 번만 할 것인가?

○답변 : 분기별로 하도록 조정할 것임

▶질의 :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것인가?

○답변 : 시에서 가입하고 보험회사에서 현장확인 후 피해액 산정하여 지급 함

▶질의 : 피해 조사할 때 피해 농민도 참여 할 수 있나?

○답변 : 참여할 수 있음

## 5. 심사결과

- ①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제명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
  - 안 제1조(목적)의 인용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
  - 조례안 내용 중 일부를 “폭력예방”에서 “폭력방지”로 수정
- ②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안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중 “경작지”를 “피해지”로 수정

## 6. 붙임

- ①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 ②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를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예방과”를 “방지 및 ”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2항 중 “예방하고”를 “방지하고”로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예방과”를 “방지와”로 수정한다.

안 제5조 중 “예방”을 “방지”로 수정한다.

안 제6조 제3항 1호 중 “예방과”를 “방지 및”으로 수정한다.

안 제7조 1호 중 “예방과”를 “방지와”로 수정한다.

안 제11조 제1항 1호 중 “예방과”를 “방지 및”으로 수정한다.

안 제13조와 제14조 중 “예방”을 각각 “방지”로 수정한다.

**< 수정안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주시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제3조(책무)①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①----- ----- 방지 및 ----- -----
②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방지하고 ----- -----
③(생략)	③(제정안과 같음)
④(생략)	④(제정안과 같음)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 방지와 ----- -----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충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 (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 방지 - ----- ----- -----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 아동·여성폭력 <b>예방과</b>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 6.(생략)            ④(생략)            ⑤(생략)</p>	<p>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조례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제정안과 같음)            1. _____ 방지 및 _____            _____            2. ~ 6.(제정안과 같음)            ④(제정안과 같음)            ⑤(제정안과 같음)</p>
<p>제7조(지역연대의 기능)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b>예방과</b>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 6.(생략)</p>	<p>제7조(지역연대의 기능)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_____ 방지와 _____            _____            2. ~ 6.(제정안과 같음)</p>
<p>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시장은 아동·여성폭력 <b>예방과</b>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b>예방과</b>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 3.(생략)            ②(생략)</p>	<p>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_____ 방지 및 _____            _____            _____            1. _____ 방지 및 _____            _____            2. ~ 3.(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p>
<p>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b>예방</b>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_____ 방지 _____            _____            _____</p>
<p>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b>예방</b>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_____ 방지 _____            _____            _____</p>

##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1항 중 “경작지”를 “피해지”로 수정한다

### < 수정안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피해보상금은 동일 농가에 대하여 당해 연도 최대 500만원 까지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u>경작지</u>에 대한 보상은 매년 1회에 한한다.</p> <p>② (생략)</p>	<p>제8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_____</p> <p>_____. _____ 피해지에</p> <p>_____.</p> <p>② (개정안과 같음)</p>